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체계 구축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 대상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과, 교직원 대상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※ (관련 법령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3. 각 대학에서는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**폭력예방교육을 적극 실시**하고, **2차 피해 및 불법촬영 예방**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**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**으로 통보받은 대학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<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안 (예시) >

-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 실시 신청 (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)

- 예방교육통합관리 누리집(shp.mogef.go.kr)에 탑재된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자료 활용

4. 또한, 각 대학에서는 **학내 화장실, 탈의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계획을 마련**하여 **자체 점검(연 2회이상)**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히 최신형 탐지 장비 구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점검 추진 등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지침)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고등교육기관전체

전문경력관 나
군

장지은

행정사무관

강예일

양성평등정책
담당관

전결 2022.7.19.

장인자

협조자

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-2085 ((2022.7.19.)) 접수 인권센터-2464 (2022.7.19.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7109 전송 044-203-6066 / jindol1199@korea.kr / 공개